

(신고 내용에 대한 불응 사항)

제 소 장

2012. 8. 29

수정본

제 목 : 방문판매 대리점(도매업자)에 대한 불공정 제소건

수 신 : 공정거래 위원장

참 조 : 불공정거래 조사 담당 사무관(경쟁 촉진과)

접수일자 : 2012. 8. 21

피제소자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181번지 아모레퍼시픽(제조사)

서 경 배 대표이사

이 민 전 (방판부문)부사장

이 우 용 (방판부문)상 무

전 화 02) 709 - 5114

2012. 8. 28 16:01

<공정위 접수 번호> 02) 3140-9619

2012. 8. 29 (98154054)

2012. 8. 29 과장: 박재규

총괄과: 정은수 (45명)
조사관

제 소 자 : 인천시 남구 학익동 272-5 현준솔로몬시티 502호

류 인 학 (오회) 인천학익지사

전 화 032) 868-9636, 010-2288-7897

1. 아모레퍼시픽(제조사)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보면 매출이익이

시정명령, 과징금, 기타등보다 많다고 판단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계속적으로 불공정 거래행위가 정도를 초월하여 아래와같이 공정
거래 위원회에 제소합니다

2. 아래 사항은 법률적으로 정식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은 3가지 유형의 업태(제조사, 도매업자, 소매업자)를 가진 사업자 들이다

아래 내용의 불공정 거래행위는 전국의 도매업자 에대한 공통사례임

1) 사업자간 업태 현황

- ① 아모레 퍼시픽은 종목(화장품) 업태(제조업,기타)
- ② 대리점은 종목(화장품) 업태(도매업)
- ③ 카운셀러 종목(화장품) 업태(소매업)

따라서 제조사는 소매업자를 직원 또는 인적소유물로 관리 하는데 이것은 제조사의 횡포이지 소매업자는 제조사의 직원도 인적소유물도 아니다. 제조사는 도매업자의 거래처인 소매업자를 제조사의 마음대로 뺏고 주고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2011년 2월 초부터 ~ 2012년 2월 말까지 수시로 제조사의 지점 또는 도매업자 사무실에서 담당 이준희, 람장 이상석 으로부터 실적부진 이유로 도매업자의 경영권 포기각서 강요

그리고 제조사가 도매업자의 거래처인 소매업자를 직급부여 하고 조직관리 해도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2003년 1월 1일 개업후 부터 ~ 2012년 현재까지 수시로 제조사의 지점 또는 도매업자 사무실에서 담당 이준희, 람장 이상석 등이 도매업자의 동의없이 소매업자와 비밀로 파트장 직급회의로 조직관리하며 도매업자에게 불이익 초래할

별첨서류 : 사업자 등록증

: 도매업자(대리점)에 지문인식기 설치로 정보수집 및 감시

3. 음주가무 또는 인맥이 있어서 인지 모르지만, 아래사항
2가지 사례 내용을 보면 규정도 원칙도 없는데 제조사는
무슨 기준으로 업무처리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래 내용의 불공정 거래행위는 전국의 도매업자 에대한 공통사례임

사례1번

- ① 도매업자의 실적이 매우 저조하거나 또는 저성장 및
기타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모르는 척 하고 지나감.
- ② 실적 부진 도매업자의 대리점과 거래처인 소매업자를
동시에 반납 받고 다른 지역의 대리점과 거래처인
소매업자를 바꿔줌.
- ③ 실적 부진 도매업자에게 다른 지역의 도매업자로부터
소매업자를 일부 또는 전부 빼앗아 실적부진 도매업자
에게 소매업자 인원을 보충(채워)해줌

사례2번

- ① 도매업자의 실적이 매우 저조하거나 또는 저성장 및 기
타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수시로 도매업자에게 제조
사는 경영진단 한다고 공포를 조성하고 제조사의 의도
대로 도매업자가 순순히 거래해지에 협력하지 않을시
도매업자의 거래해지를 하면서 까지 불이익을 주겠다면
서 협박.

2009년 6월 말경에 사부실 부근 참치횃집의 식당에서 점심식사
중 당시 제조사의 담당 제경모가 도매업자에게 위 사례와
같이 협박함

② 실적부진 도매업자의 대리점은 거래약정 6개월 단축,
상품공급중지, 포기각서강요, 거래해지. 등

거래약정서는 형식적으로 매년 월1~ 2월경에 작성하나 도매업자는 금년도 2012년 2월 중순경에 거래약정서를 도매업자 사무실에서 도매업자와 제조사 담당 이준희의 일방적인 거래약정서를 작성후 제조사 담당 이준희가 작성한 거래약정서를 가져간후 돌려받지 못함. 포기각서 내용은 위 참조
거래해지는 2012년 3월31일 도매업자 사무실에서 제조사의 담당 이준희, 팀장 이상석등이 사례 2번의 ①번과같이 이루어진 내용임

③ 실적부진 도매업자는 제조사가 도매업자의 거래처인 소매업자 인원을 일부 또는 전부를 빼앗아 제3자 도매업자를 선정하여 강제 인계 하게함.

2012년 3월 31일부로 도매업자 사무실에서 제조사 담당 이준희 팀장 이상석등이 소매업자를 도매업자(류인혁)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1차 소매업자 44명을 새로운 도매업자(박종우)를 선정하여 빼앗아 줌. 2차 소매업자 13명을 제조사 직영 (연수영업소)으로 빼앗아 감. 3차 소매업자 9명을 새로운 도매업자(한희권)를 선정하여 빼앗아 줌. 빼앗긴 소매업자 총인원 66명

별첨서류 : 아모레퍼시픽 기업윤리는 정직, 신용, 무한책임
주의인데 현실은 불공정 거래행위가 정도를 넘는다

: 도매업자(대리점) 인적사항

4. 월말 도매업자의 자금 흐름압박에도 불구하고 목표부여 및 매입밀어내기 현금결제요구 및 도매업자통장 자금흐름조사

2012년 1월초 ~ 2012년 2월말 도매업자 사무실에서 제조사 담당 이준희가 매입강요후 도매업자의 사업용 통장의현금 흐름 조사함

별첨서류 : 도매업자 사업용 통장

5. 대리점 주변 환경이 유흥업소 밀집지역이라면서, 대리점 이전 강요(압박)으로 과다투자(제조사가 인테리어 업체선정, 대리점 확장 임대료과다)로 누적적자가 이루어짐

아래 내용의 불공정 거래행위는 전국의 도매업자 에대한 공통사례임

2011년 1월 중순경 동인천 도매업자(천의섭)의 사무실에서 제조사인 담당 이준희가 회의후 도매업자(류인화)을 별도로 만나서 위의 내용과 같이 강요함. 제조사는 사전에 불공정한 업무(행위)는 절대로 서면 또는 문서로 하지않고 제조사 담당 또는 팀장등이 도매업자와 반드시 동행하여 업무처리 확인함 따라서 도매업자는 2011년 4월13일 인천시 남구 주안5동 811 - 7 범흥빌딩 4층에서 인천시 남구 학익동 295-1 두원빌딩 3층으로 이동함

6. 제조사가 소매업자를 이용하여 도매업자의 모든 영업활동 정보수집을 한 다음 제조사가 도매업자의 약점을 파악하여 사사건건 간섭하고, 영업에 상당한 불이익을 줌

. 아래 내용의 불공정 거래행위는 전국의 도매업자 에대한 공통사례임

2003년 1월 1일 개업후 부터 ~ 2012년 현재까지 수시로 제조사의 지점 또는 도매업자 사무실에서 담당 이준희, 팀장 이상석 등이 도매업자의 동의없이 소매업자와 비밀로 파트장 직급회의로 조직관리하며 도매업자에게 불이익 초래함.

7. 제조사가 도매업자의 직원을 통하여 수시로 도매업자의 영업활동, 출.퇴근 기타등 정보수집 후 제조사가 도매업자와 소매업자간의 불신감 조성.

아래 내용의 불공정 거래행위는 전국의 도매업자 에대한 공통사례임

2007년 3월경부터 ~ 2012년 현재까지 제조사가 도매업자의 사무실에 출퇴근 감시를위한 도매업자(대리점)에 지문인식기 설치로 정보수집 및 감시 또한 도매업자의 직원(나은희,유선미,최수경)등에게 전화로 점검 및 도매업자의 자택방문 (2011년 9월 중순경 제조사 담당 이준희).

2008년 1월 1일부터 ~ 2012년 3월까지 제조사인 담당 한창복, 담당 김부혁, 담당 이현석, 담당 채정모, 담당 이준희, 담당 김효동 등이 도매업자의 동의없이 소매업자와 미달리에 도매업자에 대한 약점 및 영업현황을 비밀설문조사로 정보수집

8. 뷰티포인트(마일리지)는 제조사가 소매업자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조사가 무상지급 하는 시상인데, 제조사는 어떻게 도매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매입도 하지 않았는데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정리한바, 이에 합당한지 묻고 싶습니다 제조사 답변없음

아래 내용의 불공정 거래행위는 전국의 도매업자 에대한 공통사례임

2012년 1월1일부터 ~ 2012년 3월 31일까지 도매업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제조사가 허위매입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2년 7월20일 제조사 담당 이준희가 이메일로 보내고 유선 전화로 다시한번 확인 및 강요함.

도매업자(류인학)에게 허위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금액 도매가 기준 26,612,000원이고 기타(소비자) 직매출가 기준으로 43,003,000원입니다

전국 도매업자(대리점)수 550여개, 세금계산서 발행기간(1~ 6월)
전국 도매업자 1인당평균 허위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최저 53,000,000원 ~ 최고 150,000,000원 예상
(총 합산계) 최저: 200억 5천만원 ~ 최고 : 300억원 예상

별첨서류 : 국세청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에대한 처벌기준
: 제조사가 매일전송으로 부가세신고 요구 (담당 이준희)
: 매입전자세금계산서 1월 ~ 3월까지 목록 (수정전후)

따라서 제조사가 도매업자에게 뷰티포인트(마일리지)매입
정리하고, 도매업자에게 기타(소비자) 직매출로 정리 요구함.

- ① 제조사가 도매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매입도 하지 않은것에
대하여 매입(전자세금계산서발행) 정리함으로서 도매업자
는(부가세, 종합소득세, 4대보험, 기장료, 기타)등 누진 부
과율로 도매업자는 불이익(손해)이 발생해도 되는것입니다.

9. 도매업자는 제조사로부터 거래 해지 되고 상호 및 브랜드
변경(오휘화장품) 으로 대리점을 개설하여 인테리어 작업 중
아모레퍼시픽(제조사)이 인테리어 업체에게 인테리어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만약에 인테리어 작업을 했을시 아모레퍼시
픽(제조사)의 인테리어 물량을 업체에게 주지 않겠다고 압력
을 행사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2012년3월31일 도매업자는 제조사로부터 일방적으로 거래
해지되고 도매업자는 오휘 인천화익지사(상호변경)를 개설하여
인테리어 작업중 제조사의 필장 이상석이 2012년4월30일
인테리어 업자 홍산건업 김예제에게 도매업자의 인테리어
를 중단하라고 전화로 협박받은 내용을 도매업자(류인학)에게
하소연함

10. 그동안 아모레퍼시픽(제조사)을 믿고 앞만보고 뛰어왔는데 도매업자(대리점)는 해지로 너무 억울하고 허탈(허무)합니다.

하나같이 억울하게 해지된 도매업자들은 평생을 두고 영원히 아모레퍼시픽(제조사)에 대한 불신감이 존재하는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항들을 아모레퍼시픽(제조사)이 도매업자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문제점의 해결책이 마련 되었으면 합니다.

11. 아모레퍼시픽(제조사)은 위 내용을 읽고 문제점이 있는것에 대해서 도매업자에게 답변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2012년 8월 17일까지 답변서가 없는 경우는 도매업자가 불때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관련 기관에 요청하여 검증을 받겠습니다 (답변없음)

별첨서류 : 아모레퍼시픽(제조사) 최고서 발송내용

2012. 8. 29
(4)